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-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우리 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아이낳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다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둘째 아 50만원, 셋째 아 100만원, 넷째 아 300만원으로 상향.(안 제4조)
- 나. 출산축하금 신청 시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.(안 제5조제2항)
- 다. 출산축하금 신청 시 거주기간 증빙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주민등록 등·초본으로 구비서류 정비.(안 제5조 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, 제10조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7. 11. 23. ~ 12. 13.(제출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동의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15만원, 셋째아 30만원, 넷째아 100만원,”을 “50만원, 셋째아 100만원, 넷째아 300만원,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한다.”를 “하며, 신청인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원하는 경우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 또는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

제5조제3항제3호 중 “제3조제2항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”을 “주민등록 등·초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급기준)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만원, 둘째아 15만원, 셋째아 30만원, 넷째아 100만원,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하며,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급한다.</p> <p>제5조(지급신청) ① (생 략) ② 거주지 관할 동장(이하 “동장”이라 한다)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지급기준) ----- ----- ----- 50만원, 셋째아 100만원, 넷째아 300만원,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지급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하며, 신청인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원하는 경우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.</p>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

2. (생략)

3. 제3조제2항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 등 입증서류

③ -----
-----.

1.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
또는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

2. (현행과 같음)

3. 주민등록 등·초본 -----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다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상향
 - 둘째아 15만원→50만원, 셋째아 30만원→100만원, 넷째아 100만원→300만원
- 관련조문 : 제4조(지급기준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개년간 출산축하금 지급건수 평균으로 인원 산출

(단위 : 명, 천원)

구분		첫째아	둘째아	셋째아	넷째아	다섯째아 이상
기준	계	100	500	1,000	3,000	5,000
인원	3,088	1,964	979	133	9	3
예산	860,900	196,400	489,500	133,000	27,000	15,000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구비	860,900	860,900	860,900	860,900	860,900	4,304,500
	소계(b)	860,900	860,900	860,900	860,900	860,900	4,304,500
□ 총 비용(a-b)		860,900	860,900	860,900	860,900	860,900	4,304,500

4. 재원조달 방안 : 2018년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과 조경미
연락처	02-3153-8935